

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3 호

국회 사무처

2022년5월20일(금) 오후 6시

의사일정

1.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5540)
2. 국회의원(이영)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5634)
3.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진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115502)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홍근 의원 외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15681) 1
- 의사진행발언 1
- 3.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진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115502) 4
- 회의 공개 동의의 건(권성동 의원 등 109인 서면동의) 4
- 3.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진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115502) 4
- 의사진행발언 8
- 1.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5540) 10
- 2. 국회의원(이영)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5634) 10

(18시09분 개의)

○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홍근 의원 외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15681)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박홍근 의원 외 166인
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
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0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00인, 기권 2인
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
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18시12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대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
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
다.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부를 유린하는 거대 정

당을 저지할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소수 정당의 한계 앞에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거대 정당 민주당은 소신 있는 소수당의 국회의원이 다수 정당의 꿈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해석으로 옹아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사조차도 없이 폄훼하고 겁박하고 보복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적으로도 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는 곧 국회가 국회를 폭파하는 자폭행위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의회 폭거를 막아 주십시오.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징계안은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먼저 징계요건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제148조의2에서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들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155조 10호를 보시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한 4월 26일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이 위원장석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돌려 보고 또 돌려 봤는데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우라는, 비키라는 단 한마디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왜 박광온 위원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정회 상태였고 법사위 개의를 위해 박광온 위원장이 입장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박광온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점거 해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징계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억지스러운 징계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징계안은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안이 제출되어, 상정되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정확한 사

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징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하급 공무원도 징계할 때는 사실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어서 징계청구를 하고 징계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징계하는데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이 문명천지에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어떻게 사실관계 조사도 아니하고 징계청구를 하는 겁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수당이 본회의 의결을 무기로 삼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김기현의 인권을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습니다.

(「잘못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징계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그리고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를 헌법소원 심판으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징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 의원이라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징계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소수 정당을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는 용졸한 작태를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투성이인 징계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의 모든 과정을 공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징계안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인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의원은 모든 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이 있다면 그리

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마저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의원 스스로 여러분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개 동의 요청을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겁니다. 공개 동의 요청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이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자신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실제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입법 미비인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비공개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부표를 던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석 권성동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국회가 몹시 소란스러울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드렸던 말씀이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많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갑자기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하며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우우’ 하며 다른 당 위원들의 발언을 막고 야유까지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고성과 막말로 서슴지 않았습니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당한 법사위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본인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도 무시하는 본인들 말 그대로 자폭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샷대질을 참한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한 배현진 의원의 수준 역시 보기가 딱합니다. 허위 사실로 의장을 비난하고 심지어 의장에 대해 조롱과 샷대질까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국회는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월 26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저지른 국회선진화법 파괴행위와 30일 국회의장 회의장 진입 방해와 배현진 의원 등의 언동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합의안 파기의 전 과정과 국회 폭력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솔직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 아니, 그렇다면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의자에 한번 앉아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놓은 원내대표께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하신 것입니까?

제가 철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26일 23시 50분경에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입장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 10분 동안만 붙잡고 있으면 아마 회차가, 차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의안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의도 있는 행동이 분명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의자에 앉아서 의사봉까지 탈취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서는 사실을 묵도하시기 바라고 동영상은 비롯한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은 사실 한두 번이 아

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 난입해 고의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2019년 4월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불법으로 막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윤리는 물론 상도의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정치에 자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법을 자행할 것입니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2019년 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검찰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여러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믿는 구석이 있어 국회법쯤은 안 지켜도 된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입니다. 야당 때 쓰던 펜과 스피커를 내려놓고 늘어난 권한만큼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힘……

(장내 소란)

앉으세요! 나대지 마시고 앉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석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진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115502)

(18시25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4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국회법 제156조제7항에 따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의 공개 동의를 건(권성동 의원 등 109인 서면동의)

○의장 박병석 국회법 제158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권성동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공개하자는 회의 공개 동의를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58조 단서에 따라 회의 공개 동의를 건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공개 동의를 건이 부결되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공개 동의를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7인 중 찬성 26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회의 공개 동의를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의 공개 동의를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58조 단서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진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115502)

(18시27분)

○의장 박병석 그러면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법 제148조의2에서는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국회법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2013년 8월 신설된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에는 회의 방해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김기현은 2022년 4월 26일 23시 55분 경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심각히 방해하였습니다.

더욱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원 김기현은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국회법 제25조, 제148조의2,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제4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55조제10호 및 제1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의원 김기현에 대하여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국회가 새 대통령 취임 후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국회 스스로가 존중받고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징계안이 가결되어 의회주의를 바로잡고 진정한 협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징계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병석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는 분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160조에 따라 징계안에 관한 의원의 변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상 용어가 '변명'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명이 끝난 후 징계 대상 의원님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안 썼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 의원 민주당 의원님도 마스크 안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궤변의 극치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 하고 싶었다고 그러시던데 후반기 법사위원장 저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 저는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인사의 대상은 국민들이었지 대한민국국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이외에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존경하는'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겠습니다.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 매고 나왔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오늘 죽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기 얼마 전에 15분 정도 발언 시간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구질구질하게 시간 끌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 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합니다.

작년 9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에 거기에 더해서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해서 국민들께 낱알이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을 추적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제가 엄청 미울 겁

니다. ‘김기현이만 아니면 이재명인 내가 대통령이 돼 있을 텐데 저 김기현이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봉고파직할 뿐만 아니라 봉고파직할 후에 위리안치형을 선고하겠다는데, 그것도 남극 섬에 위리안치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개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지금 민주당의 주인이 돼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오만한 소리를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이 저놈을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김기현이의 입을 막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법적 제재를 가해 달라’,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뻔뻔스럽다, 김기현!」 하는 의원 있음)

또 한편으로 보면 검수완박법 날치기,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고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했지요. 그렇게 해서 날치기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물을 덮기 위해, 뭔가 국면전환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면서 제가 번번이 협상에서도 이기고 싸움에서도 이기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 내니까 패썹죄를 묻고 싶을 겁니다. 입장이 바뀌어도 아마 패썹죄를 묻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정해진 최대의 징계가 제명인데 제명을 하자니 자신이 없어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모호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식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식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들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 나눈 분들 중에 상식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열토당토않은 징계안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가해지지 않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그 제안설명도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국회법 요건에 맞는 제안설명이라도 하셔야지, 그 제안설명을 다 따르더라도 국회법에 정해진 징계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웃기지 않습니까?

(「안 웃겨요!」 하는 의원 있음)

어차피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이니까 마음대로 하시겠지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그런데 이 부끄러운 징계절차를 국회의 기록으로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만큼은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당시에 법사위는 민주당이 수많은 꼼수에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안을 강행처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의지를 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저항권은 헌법에 정해진 저항권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조치라고 확신하고 또 다른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직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법사위 회의가 개최되기 전인 공백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들어오셨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고서, 일부 앞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제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시면 명확하게 그 사실이 다 잘 드러나 있고 속기록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저에게 위원장직을 비워 달라는 점거 해제 요구를, 해제 조치를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회법 제155조 10호, 그 징계 해당 요건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위원장직을 점거할 것. 두 번째, 위원장직 해제를 위한 조치를 할 것. 그 조치는 제삼자나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안 되며 반드시 위원장이 할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은 위원장은 저에게 비켜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불응하지도 않았습니 다. 제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대한민국국회 초유의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제명당하 신 일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와 같은 폭거와 비슷한 형태가 본회의에 지금 직접 상정되어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수당의 폭력에 의해서 강 행처리하겠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 모습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록은 후세에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 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뜻이 저를 틀림없이 징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 렇게 강행처리했겠지요.

그런데 후세에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때 이 안건을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름이 역사 의 기록으로, 오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학 시절에 군사정권을 타도하겠다고 외치면서 데모하고 시위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는 지금 도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무릎 꿇고 살 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

저의 아버지는 민주화 투쟁을 했던 인사였습니 다. 그 당시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을 하면서 군 사정권에 항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의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저는 대학 시절부터 군사정권의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 현장 에 직접 참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자유민주 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 그 노력들이 오늘 민주주의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가장 도덕적이라고 외치면서 민주화 최고의 유공자라 고 하면서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오늘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김기현 지금까지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 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 을 것입니다.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내 양심에 당당한 일을 했고 앞으로 도 계속 그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정말 본 의원이 지도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처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한 다 하시면 낮부끄럽게 비겁하게 출석정지 30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명시키십시오. 그 게 간명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시겠다, 좋습 니다. 그러면 먼저 선행조치하셔야 될 게 있습니 다. 뭔지 아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 눈물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한 전 민주당 소속 윤 미향 의원.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오늘 판결도 났지요, 집행유예 판결. 불법 범죄행위 했다고.

거기에 찼찼이 논란까지 벌이고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 성범죄에 도 불구하고 그냥 당원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꿈 수로서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있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의원, 특히 이분은 민 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위직 당직자 출신이시 지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국회의 명예를 떨어뜨 려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조각조각 박 살 내 놓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제명 을 먼저 추진하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징계안 처리 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두 번째 폐족 선 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제 예언대로 맞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위원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대 선 지면 감옥 갈 것 같다’ 예언했지요. 민주당의 위법과 탈법, 꿈수로 점철된 의회 폭거, 이에 대 한 단죄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 예언은 다름 아닌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고 그 정의와 진실을 붙잡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 반드시 단절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단죄의 날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을 던져서 검수완박법, 우리 국민들의, 서민 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서민들의 권리행사와 권익보호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 검수완박법 저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악법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 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이고 부당

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폭거를 지속하다가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지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김기현은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4년 전에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와대가 총동원되었고 행정부까지 가담하고 경찰 조직이 총동원된 이 폭거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은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오희이처럼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이 폭압적 징계에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다시 오희이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 제가 해야 될 시대적 사명 오로지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나라 의회 민주주의 지키는 일에 저의 혼신을 다 쏟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 김기현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석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조은희 의원, 최재형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경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

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8시50분 투표개시)

○의장 박병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9시06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은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50표, 부 109표, 기권 9표로서 30일의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19시06분)

○의장 박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대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후보자 한덕수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적격 여론이 높았던 것 잘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그런 눈높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공직자는 정말 국민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기 업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야 합니다.

(장내 소란)

어떤 의원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김형동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은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민주당이 찬성하는 걸 반대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지금? 그냥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야기를 들으세요.

○의장 박병석 국민의힘에도 원하시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15년 전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공직에서 일했던, 나라일을 했던 경력으로 짧은 기간 44억을 축재한 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업체에서 공직의 경력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실현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공직으로, 그것도 최고의 공직으로 오시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표상이 돼야 될 자리입니다. 영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과거의, 예를 들어 고건 전 총리와 같이 공직을 수행하고 나서 정말 청렴하게 사셨으면 다시 공직의 기회가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분의 이런 돈 잘 버는 전직 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높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원칙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문제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심이 깊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전관예우·이해충돌, 그래서 이 회전문 인사 논란을 대표적인 사례로 만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또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도 이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는 소위 한덕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 이제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요 국민들과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저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향후 그런 재발방지책을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드리는 만큼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허수아비 총리, 의전 총리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청문회에서는 책임총리제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본인이 책임지고 내각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오늘 정권교체 이후에 첫 총리,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첫 총리다 보니까 저희도 고심 끝에 통 크게 대승적으로 임명동의를 해 주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정공백 없게끔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삶을 더 제대로 보살피라고 하는 우리의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주당의 이런 뜻을,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한덕수 총리후보자도 또 국민의 힘도 그런 우리의 뜻을 제대로 좀 받아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빚어진 이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그 출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협치 말하지 마시고, 말로만 협치 말고 진심으로 국회를,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종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로서의 권능을 지켜 주시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다 부결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은?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지만 스스로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과반의석의 정당으로서의 숙명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런 결정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세 번에 걸쳐 다 국무총리를 반대 당론으로 정하고 보이콧을 했던 본인들의 모습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총리 동의안 처리를, 의결을 기점으로 삼아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여러분께 우리가 그런 원칙, 소신을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전체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로서는 그런 나라를 위한 대승적인 통 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석 박홍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대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권성동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격론 끝에 새 정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5540) (19시15분)

○의장 박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해 왔습니다. 5월 10일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5일, 5월 2일 및 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직후보자 한덕수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돼 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신현영 의원, 조은희 의원, 최재형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난 뒤에는 국회의원 이영 의원의 사퇴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경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

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9시17분 투표개시)

○의장 박병석 시작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9시3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가 208표, 부 36표, 기권 6표로서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의원(이영)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5634) (19시32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이영)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겸직으로 인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 제112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영)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158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희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허영표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반대 의원(100인)

강기윤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金炳旭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정재	김학용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류성걸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박성중	박수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유의동
윤두현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영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현승	임이자
장제원	전봉민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우택	정운천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조태용
조해진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기권 의원(2인)

장혜영 조정훈

○회의 공개 동의의 건**투표 의원(267인)****찬성 의원(261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식	김영주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류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병길	안호영	양정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임병헌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제원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희			

반대 의원(3인)

윤재갑 임오경 주철현

기권 의원(3인)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출석 의원(281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병길
안호영	양정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 병 훈 이 소 영 이 원 욱 이 장 섭 이 종 성 이 탄 희 이 현 승 임 오 경 장 경 태 전 봉 민 전 해 철 정 성 호 정 점 식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오 섭 조 정 훈 주 호 영 천 준 호 최 연 숙 최 춘 식 태 영 호 한 무 경 허 영 홍 문 표 홍 익 표 황 희

이 상 민 이 수 진 이 용 빈 이 원 택 이 재 정 이 주 환 이 태 규 이 형 석 임 이 자 장 제 원 전 용 기 전 혜 숙 정 우 택 정 진 석 정 태 호 조 명 희 조 은 회 조 태 용 지 성 호 최 강 욱 최 인 호 최 형 두 하 영 제 하 병 도 한 은 아 홍 석 준 홍 정 민

이 상 현 이수진(비) 이 용 선 이 은 주 이 정 문 이 채 익 이 학 영 인 재 근 임 종 성 장 철 민 전 재 수 정 경 희 정 운 천 정 찬 민 정 필 모 조 수 진 조 응 천 조 해 진 진 선 미 최 기 상 최 재 형 최 혜 영 하 태 경 한 정 애 허 종 식 홍 성 국 황보승희

이 성 만 이 양 수 이 용 우 이 인 영 이 종 배 이 철 규 이 해 식 임 병 현 임 호 선 장 혜 영 전 주 혜 정 동 만 정 일 영 정 청 래 정 회 용 조 승 래 주 철 현 진 성 준 최 승 재 추 경 호 한 기 호 홍 기 원 홍 영 표 황 운 하

김 한 정 김 회 국 류 성 곁 문 진 석 박 대 수 박 상 혁 박 수 영 박 진 교 배 재 일 서 삼 석 소 병 훈 송 언 석 신 영 대 안 규 백 양 금 희 양 향 자 오 영 환 유 경 준 유 의 동 윤 두 현 윤 영 찬 윤 준 병 윤 후 덕 이 만 희 이수진(비) 이 용 선 이 은 주 이 정 문 이 채 익 이 해 식 임 오 경 장 경 태 전 봉 민 전 해 철 정 성 호 정 점 식 정 태 호 조 명 희 조 은 회 조 태 용 지 성 호 최 강 욱

김 형 동 남 인 순 류 호 정 민 병 덕 박 대 출 박 성 민 박 영 순 박 주 민 배 현 진 서 동 용 서 영 교 설 갑 석 송 옥 주 신 원 식 안 병 길 양 기 대 어 기 구 우 상 호 유 기 홍 유 정 주 윤 상 현 윤 재 갑 윤 창 현 이 개 호 이 명 수 이 성 만 이 양 수 이 용 우 이 인 영 이 종 배 이 철 규 이 현 승 임 이 자 장 제 원 전 용 기 전 혜 숙 정 우 택 정 진 석 정 필 모 조 수 진 조 응 천 조 해 진 진 선 미 최 기 상

김 회 재 노 웅 래 맹 성 규 민 형 배 박 덕 흙 박 성 준 박 용 진 박 찬 대 백 종 현 서 범 수 성 일 종 송 기 현 송 재 호 신 현 영 안 호 영 양이원영 엄 태 영 우 원 식 유 동 건 영 윤 영 덕 윤 재 욱 윤 한 홍 이 달 곤 이 병 훈 이 소 영 이 원 욱 이 장 섭 이 종 성 이 태 규 이 형 석 임 종 성 임 종 성 장 철 민 전 재 수 정 경 희 정 운 천 정 찬 민 정 회 용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정 훈 주 철 현 진 성 준 최 승 재

김 희 곤 도 종 환 문 정 복 민 홍 철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재 호 박 흥 근 백 혜련 서 병 수 서 일 준 소 병 철 송 석 준 신 동 근 심 상 정 양 경 숙 양 기 형 위 성 곤 유 상 범 윤 관 석 윤 영 석 윤 주 경 윤 호 중 이 동 주 이 상 민 이 수 진 이 용 빈 이 원 택 이 재 정 이 주 환 이 학 영 임 병 현 임 호 선 장 혜 영 전 주 혜 정 동 만 정 일 영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오 섭 조 정 훈 주 호 영 천 준 호 최 연 숙

○개의 시 재석 의원(269인)

강 기 윤 강 민 정 강 훈 식 구 자 근 권 은 회 김 경 만 김 남 국 김 민 석 金炳旭 김 석 기 김 성 환 김 승 원 김 영 진 김 용 판 김 정 재 김 철 민

강 대 식 강 병 원 고 민 정 권 명 호 권 인 숙 김 경 협 김 도 읍 김 민 철 김 병 주 김 선 교 김 수 흥 김 영 배 김 영 호 김 웅 김 정 호 김 태 년

강 득 구 강 은 미 고 영 인 권 성 동 권 칠 승 김 교 흥 김 미 애 김 병 기 김 상 훈 김 성 원 김 승 남 김 영 식 김 예 지 김 원 이 김 주 영 김 태 호

강 민 국 강 준 현 고 용 진 권 영 세 기 동 민 김 기 현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승 수 김 영 주 김 윤 민 김 진 표 김 학 용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산회 시 재석 의원(250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병기 김병욱 김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양수 이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임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해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희

○청가 의원(8인)

김의겸 박완주 박진 신정훈
용혜인 윤미향 이용 이용호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이춘석
의사국장 김경호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	윤두현	국민의힘	2022. 5. 16.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소병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2022. 5. 16.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제명	2022. 5. 16.

○의안 제출

국세청장후보자(김창기) 인사청문요청안

(2022. 5. 16. 대통령 제출)

5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안병길 · 구자근 · 권명호 · 김태호 · 김형동 · 박대수 · 백종현 · 서병수 · 유의동 · 이종성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안병길 · 구자근 · 권명호 · 김태호 · 김형동 · 박대수 · 백종현 · 서병수 · 유의동 · 이종성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이수진(비) · 강민정 · 송옥주 · 안호영 · 양경숙 · 양이원영 · 양정숙 · 윤미향 · 이탄희 · 임종성 · 최강욱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이종성 · 구자근 · 정우택 · 성일종 · 조명희 · 정운천 · 김형동 · 박형수 · 박대수 · 김예지 · 최연숙 의원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유정주 · 권인숙 · 김민석 · 김민철 · 신동근 · 오영환 · 용혜인 · 이병훈 · 이상현 · 임오경 · 장경태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강병원 · 김민철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의겸 · 남인순 · 박재호 · 배진교 · 변재일 · 신동근 · 윤영덕 · 윤재갑 · 이용빈 · 이원욱 · 이해식 · 이형석 · 정태호 · 정필모 · 주철현 · 최강욱 · 최인호 · 최종윤 · 홍성국 · 홍영표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하태경 · 김경협 · 김병기 · 백종현 · 송석준 · 신원식 · 양정숙 · 엄태영 · 윤창현 · 이병훈 · 주호영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강대식 · 金炳旭 · 김선교 · 류성걸 · 박대수 · 배준영 · 백종현 · 서정숙 · 송언석 · 신원식 · 유경준 · 주호영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22. 5. 16. 임병헌 · 강기윤 · 김상훈 · 김석기 · 김성원 ·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판 · 박대수 · 조명희 · 최연숙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정청래 · 고민정 · 김두관 · 김영배 · 박성준 · 안규백 · 유정주 · 윤영덕 · 전용기 · 임오경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구자근 · 권명호 · 김석기 · 김선교 · 김예지 · 배준영 · 안병길 · 이종성 · 임이자 · 정동만 의원 발의)

이상 11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요청안

(2022. 5. 17. 대통령 제출)

5월 17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김민석 · 강득구 · 고민정 · 고영인 · 박주민 · 신정훈 · 오영환 · 이원욱 · 최혜영 · 홍정민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윤재갑 · 최기상 · 이개호 · 김민철 · 신정훈 · 위성곤 · 소병철 · 홍문표 · 전용기 · 주철현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유경준 · 이명수 · 정우택 · 金炳旭 · 조명희 · 서정숙 · 태영호 · 이채익 · 유상범 · 강대식 의원 발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유상범 · 권성동 · 권은희 · 김기현 · 김미애 · 김병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 김학용 · 김형동 · 류성걸 · 박대수 · 서병수 · 서정숙 · 송언석 · 유경준 · 유의동 · 윤두현 · 이용호 · 이태규 · 전주혜 · 정경희 · 정점식 · 정진석 · 정희용 · 조경태 · 조태용 · 최연숙 · 최형두 · 태영호 · 하영제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강득구 · 김민석 · 김민철 · 김철민 · 양경숙 · 양이원영 · 양정숙 · 윤미향 · 윤영덕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욱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유상범 · 권은희 · 김기현 · 김미애 ·
金炳旭 · 김상훈 · 김석기 ·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 김태호 · 김학용 · 김형동 · 류성길 ·
박대수 ·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
송언석 · 신원식 · 유경준 · 유의동 · 윤두현 ·
이용호 · 이태규 · 전주혜 · 정경희 · 정점식 ·
정진석 · 정희용 · 조경태 · 조수진 · 조태용 ·
최연숙 · 최형두 · 태영호 · 하영제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

(2022. 5. 17. 강득구 · 권은희 · 김민철 · 김철민 ·
송갑석 · 양정숙 · 양이원영 · 양정숙 · 이용빈 ·
정태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

(2022. 5. 17. 정우택 · 권명호 · 김영식 · 김예지 ·
박성민 · 유경준 ·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
조경태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강득구 · 강민정 · 김민석 · 김민철 ·
김철민 · 양정숙 · 양이원영 · 양정숙 · 윤영덕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욱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 발의)

(2022. 5. 17. 이주환 · 권명호 · 김기현 · 김예지 ·
김용판 · 박대수 · 안병길 · 양금희 · 이현승 ·
지성호 · 홍문표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배준영 · 백종현 · 구자근 · 최춘식 ·
정우택 · 허종식 · 전주혜 · 안병길 · 이용 ·
김상훈 의원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김병욱 · 고용진 · 김상희 · 신영대 ·
이정문 · 정성호 · 정필모 · 최기상 · 최인호 ·
홍정민 의원 발의)

국회의원(박완주) 징계안

(2022. 5. 17. 진성준 · 강득구 · 김민기 · 강민정 ·
고민정 · 김수홍 · 김성환 · 김정호 · 박영순 ·
박찬대 · 서삼석 · 신정훈 · 이동주 · 이소영 ·
이수진(비) · 이장섭 · 이정문 · 양정숙 · 오영환 ·
전용기 · 조오섭 · 조웅천 · 천준호 · 최기상 의원
요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7. 이해식 · 이형석 · 김영배 · 한정애 ·
김성환 · 김영호 · 우원식 · 박재호 · 전해숙 ·
천준호 · 임호선 · 한병도 · 서영교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2. 5. 18. 이주환 · 권명호 · 김기현 · 김예지 ·
김용판 · 박대수 · 안병길 · 양금희 · 이현승 ·
지성호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5. 18. 이종성 · 구자근 · 김용판 · 박대수 ·
서일준 · 이명수 · 정우택 · 정운천 · 조명희 ·
성일종 의원 발의)

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022. 5. 18. 이종배 · 김성원 · 김승수 · 김형동 ·
박덕흠 · 성일종 · 정우택 · 추경호 · 홍문표 ·
홍석준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22. 5. 18. 김상희 · 김두관 · 김철민 · 민병덕 ·
윤준병 · 정태호 · 정필모 · 최기상 · 최혜영 ·
한정애 의원 발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이용빈 · 강득구 · 김윤덕 · 김홍걸 ·
박찬대 · 서영교 · 송갑석 · 양이원영 · 양정숙 ·
이원욱 · 이형석 · 정필모 · 최기상 · 한병도 ·
한준호 의원 발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수홍 · 김경만 · 김성주 · 송재호 ·
안호영 · 양정숙 · 우원식 · 윤준병 · 최기상 ·
한병도 의원 발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수홍 · 김경만 · 김성주 · 송재호 ·
안규백 · 안호영 · 양정숙 · 윤준병 · 최기상 ·
한병도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수홍 · 양정숙 · 김경만 · 김성주 ·
한병도 · 안호영 · 안규백 · 송재호 · 정성호 ·
윤준병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권성동 · 권은희 · 金炳旭 · 김승수 ·

김희곤 · 박대수 · 박성민 · 박형수 ·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 성일종 ·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 양금희 · 유경준 · 윤두현 · 윤창현 · 이종성 · 전봉민 · 정동만 · 정우택 · 조은희 · 지성호 · 한무경 · 허은아 · 홍석준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강대식 · 김상훈 · 박대수 · 배준영 · 백종현 · 신원식 · 유경준 · 이용 · 조수진 · 황보승희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이탄희 · 강득구 · 강민정 · 권인숙 · 김교홍 · 김민기 · 김민철 · 김영호 · 김진표 · 김철민 · 도종환 · 류호정 · 민병덕 · 서동용 · 용혜인 · 윤미향 · 이용빈 · 이용우 · 이형석 · 임종성 · 임호선 · 전용기 · 주철현 · 천준호 · 최기상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정우택 · 백종현 · 강기윤 · 하영제 · 지성호 · 구자근 · 윤영석 · 조경태 · 황보승희 · 태영호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 · 박대출 · 정우택 · 송석준 · 김선교 · 하영제 · 지성호 · 송언석 · 배준영 · 태영호 · 강대식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강대식 · 김상훈 · 박대수 · 배준영 · 백종현 · 송언석 · 신원식 · 유경준 · 이용 · 조수진 · 하태경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 · 김선교 · 박대출 · 배준영 · 송석준 · 송언석 · 유경준 · 정우택 · 지성호 · 하영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홍석준 · 송언석 · 김성원 · 지성호 · 김태호 · 윤창현 · 정우택 · 서일준 · 김용판 · 이양수 의원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 · 박대출 · 정우택 · 송석준 · 김선교 · 하영제 · 지성호 · 송언석 · 배준영 · 태영호 · 강대식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 · 박대출 · 정우택 · 송석준 · 김선교 · 하영제 · 지성호 · 송언석 · 배준영 · 태영호 · 강대식 의원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 · 박대출 · 정우택 · 송석준 · 김선교 · 지성호 · 송언석 · 하영제 · 태영호 · 배준영 · 강대식 의원 발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이주환 · 권명호 · 김예지 · 김용판 · 박대수 · 안병길 · 양금희 · 윤창현 · 이명수 · 이현승 · 지성호 의원 발의)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하태경 · 강대식 · 백종현 · 서병수 · 신원식 · 안규백 · 이주환 · 조해진 · 한기호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용판 · 서일준 · 임병헌 · 강대식 · 이주환 · 하영제 · 박대수 · 김상훈 · 최춘식 · 유경준 · 이종성 · 김학용 · 권명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용판 · 서일준 · 임병헌 · 강대식 · 이주환 · 하영제 · 박대수 · 최춘식 · 유경준 · 이종성 · 권명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용판 · 서일준 · 임병헌 · 강대식 · 이주환 · 하영제 · 최춘식 · 유경준 · 이종성 · 이채익 · 김학용 · 권명호 의원 발의)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이주환 · 권명호 · 김기현 · 김용판 · 박대수 · 안병길 · 양금희 · 이현승 · 지성호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3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의원(이영) 사직의 건

(2022. 5. 17. 이영 의원 제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5. 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5. 17.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5. 17. 정부위원장 제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5. 17.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5. 17.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5. 18.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2. 5. 20. 박홍근 의원 등 167인 서면동의)

○의안 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
요청안**

(2022. 4. 22. 대통령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
요청안**

(2022. 4. 29. 대법원장 제출)

(이상 2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상 2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5월 16일 정부에 송부

○청원 제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조치 및 발족 시한의 법제화에
관한 청원**

(2022. 5. 16. 최세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5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통보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

2022. 5. 20.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관한인사
청문특별위원회에 통보함